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. 8. 16 선고 2017가단31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7. 12.

판결 선고2017. 8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496㎡에 관하여 2015. 9. 30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~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08. 6. 13.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가 2015. 9. 30. 동생인 원고에게 "친형제인 원고

앞으로 C 전부를 2015. 12. 30.까지 무상으로 양도합니다."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5. 9. 30.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둘째 누나의 요구로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그동안 양보하고 손해 본 부분이 많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,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증여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,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고종완